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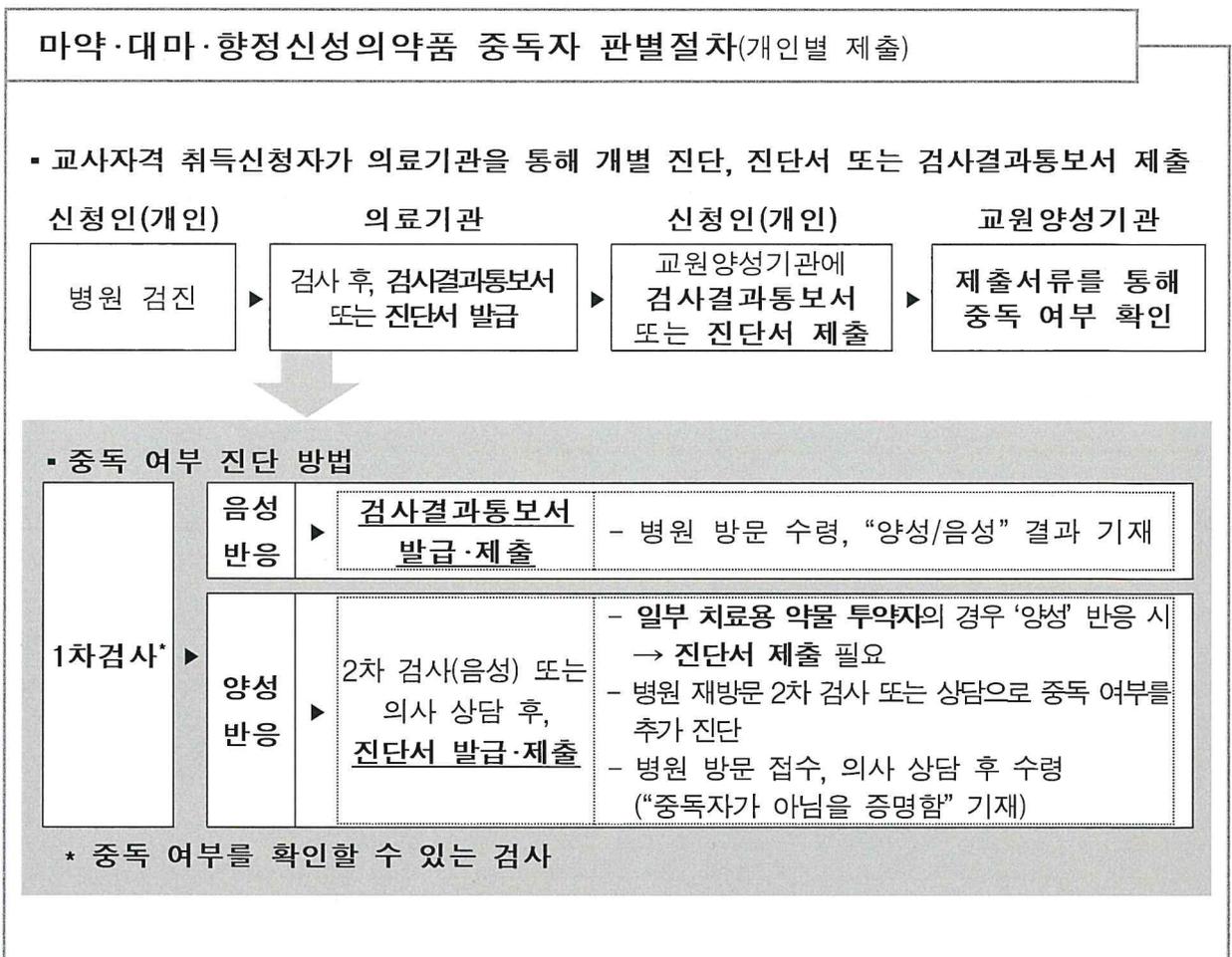
#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

<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>

## □ '24년 주요 안내사항

- (검사 방법) TBPE(협약 체결) →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(협약 미체결)
- (유효 기간) 교사 자격 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·발급한 서류
- (검사 비용) 시·도교육청 예산 상황 등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

## □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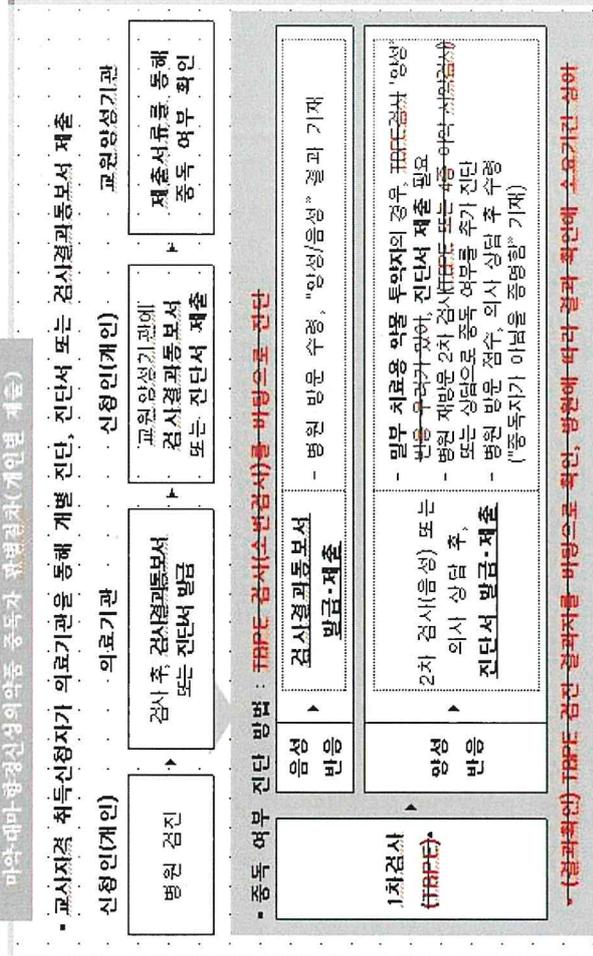
**붙임**

**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신규대비표**

2022 ~ 2023년도

**바. 기타 합격 기준 요건의 유의점**

㉠ (마약류 중독여부 판별) '무시험검정 신청자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(일괄 검진 가능)하며, 대학은 확인 후 명단을 원본과 함께 보관하도록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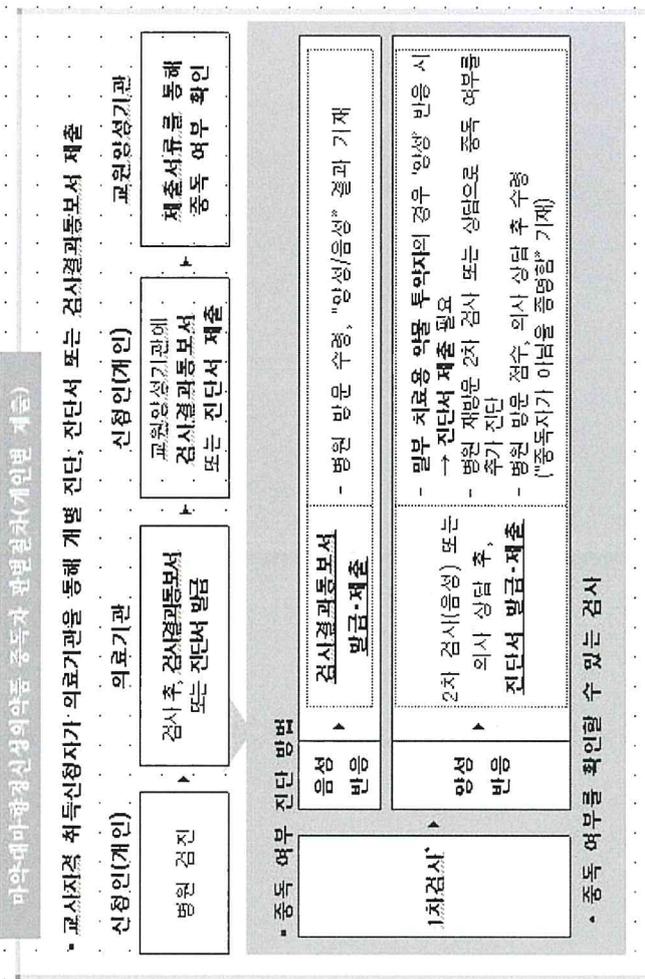
\* 중독 여부 판정의 원활화를 위해 '교육부-한국건강관리협회'와 '한국 10개 시도지부' 협약 체결

※ 서류 유효기간: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·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[교사자격취득 결과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(교원양성연수와 3322, 2021.6.21., 3323, 2021.6.21.)]

2024년도

**바. 기타 합격 기준 요건의 유의점**

㉠ (마약류 중독여부 판별) '무시험검정 신청자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(일괄 검진 가능)하며, 대학은 확인 후 명단을 원본과 함께 보관하도록 한다.



※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2제1호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약물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등보서 첨부 제출(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 제9조)

※ 서류 유효기간: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·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